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52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30. ~ 6.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을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학과등이나 전공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5.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u><신 설></u>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 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운영 규 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학과등이나 전공의 수를 고려 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 하는 경우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 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 는 경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5.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② -----

----- 공공기관-----

----- 법 제13조제4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

-----.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 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 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대학, 연구기관 또는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공공 <u>기관</u> 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1. ----- ----- 가. ----- <u>공공기관</u> -----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240 (044) 203 - 6231